

【일반회계】

**북촌지구단위계획 재정비**

2010. 1. 21. 결정 고시되어 5년 경과되는 북촌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북촌의 마스터플랜 수립 및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자함

**예산(안) 총괄** (단위 : 천원)

2012결산	2014예산 (A)	2015예산 (B)	증감 (B-A)	(B-A)*100/A
-	-	500,000	500,000	100%

**사업 설명**

사업목적

- 북촌의 장기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
-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 필요성 검토(재정비 사전타당성 심의 포함)
- 북촌 장기 발전계획에 적합한 지구단위계획 수립·운영

사업근거(근거, 방침 등)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4조(도시·군관리계획의 정비)

추진경위

- 2010. 2. 21.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(서울시 고시 제2010-11호)

사업개요

- MP선정 및 북촌 마스터플랜 수립
- 북촌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타당성 검토
- 지구단위계획 재정비(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)

2015년도 예산

(단위: 천원)

구 분		2013결산	2014예산(A)	2015예산(B)	증감(B-A)
계		-	-	500,000	500,000
시설비(401)	용역비	-	-	500,000	500,000

2015년도 예산산출 근거

- 총 계 : 500,000천원
- 북촌마스터플랜 수립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(필요시) : 500,000천원

사업추진 절차

○ 집행절차

- 예산편성 → MP선정 → 마스터플랜 수립 → 재정비타당성 검토 → 재정비 추진(필요시)

사업효과

○ 향후 기대효과

- 북촌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수립
- 2010.1월 수립된 북촌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 타당성 검토로 현

사전절차 이행 여부

<사전절차 이행여부>

구 분	투자 심사	학술 용역	정보화 예비심사	홍보· 간행물 심의	기술 심사	공유재산 심의	행사성 경비	민간이전 경비
해당 여부	×	×	×	×	×	×	×	×
심의 일자	-	-	-	-	-	-	-	-

<사전절차 이행결과>

- 해당사항 없음

□ 2015년도 추진일정

○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계획(현금)	추진세부내용
계		500,000	
MP선정	2014.01~02	-	북촌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전문가 선정
마스터플랜 수립 및 재정비 타당성 검토, 재정비 추진(필요시)	2015.03~		마스터플랜 수립, 정비 타당성 검토, 지구단위계획 재정비(필요시)

실·국	부서명	담당자			
주택정책실	한옥조성추진반	한옥조성팀장	이기봉 (2133-5572)	주무관	이화섭 (2133-5573)